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1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6년 7월 18일
제안자 : 안재홍 의원 외 3인

1. 개정이유

- 제5대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각 정당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.
- 나. 의회에 3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(안 제2조제1항)
- 다.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(안 제2조제2항)
- 라. 의장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의회에 3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교섭단체의 운영) 의장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종류)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정수에 있어 원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.

1. 운영위원회 : 5인
2. 시민행정위원회 : 5인
3. 재무건설위원회 : 5인

제6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
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 - 라. 제7조제2항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
 - 2. 시민행정위원회
 - 가.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
 - 나.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
 - 다.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관한 사항
 - 라. 종로구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
 - 3. 재무건설위원회
 - 가.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
 - 나.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
 - 다.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
- ③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

제7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.
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상임위원장) ①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 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장·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한다.
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0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·정계심사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 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.

제11조(특별위원회의 위원) ①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-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③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한다.

제12조(특별위원회 위원장)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- 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지방의회의원 총 선거후 최초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(이하 "상임 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" 같다)는 최초의 임시회 집회 회기 내에 구성하여야 한다.

- ②상임위원의 임기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료되어 차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때에는 차기 상임위원회 임기 개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소집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상임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·개선한다.
- ④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·개선한다.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.

제15조(부위원장)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-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-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소위원회위원장 선임은 제10조의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방법을 준용한다.
- ③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7조(전문위원)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(이하 "전문위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를 행한다.
-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 등)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제11조 중 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
로 한다.